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
안
번
호

88

발의년월일 : 1999년 7월 7일
발 의 자 : 허명화의원외15인

1. 제안이유

- 서초구의 쓰레기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파악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파악.
- 의회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재 주민의 불편사항인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하여 실태파악 등을 통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와 의회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있음.

2. 주요골자

- 가. 쓰레기 처리방법의 추진 실태파악
- 나.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처리 문제점과 개선방향
- 다. 공동주택단지의 쓰레기 처리현황 및 실태파악
- 라. 서초구내의 쓰레기 처리방법의 장기적인 개선대책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0조(위원회의 설치)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
- 나. 기타 : 없음

4. 구성결의안 : 따로 붙임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초구의회는 주민의 폐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재의 쓰레기 처리 실태와 방법 등을 파악하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제시하고, 특히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쓰레기 처리 실태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결의한다.

1. 특별위원회명 :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2. 특별위원회 구성 : 9명이내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함)

3. 부의 안건 및 활동 범위

- 부의 안건 :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활동 범위
 - 쓰레기 처리 방법의 추진 실태 파악 : 일반 주택, 아파트 단지
 -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 : 688개소
(집단 급식소 82개소, 식품 접객업 583개소, 대규모 점포 20개소, 관광 숙박업 3개소)
 - 공동주택 단지의 쓰레기 처리 현황 및 실태 파악 : 아파트 단지
 - 서초구내의 쓰레기 처리 방법의 장기적인 개선 대책 : 구의회 개선 안

4. 존속기간

- 특별위원회 구성 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안건 의결시 까지

5. 활동방법

- 특별위원회에서 김포후 본회의에 부의
- 관계관 출석 질의·답변 및 현장 방문 실시
- 필요시 공청회 개최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